C - 7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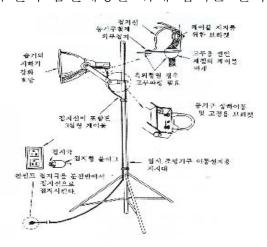
- (라) "브레이커" 란 함은 압축공기,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타격과 진동의 원리로 암을 파쇄 하는 장비를 말한다.
- (마) "평활도" 란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시트 작업 안전기준

4.1 작업 시 안전사항

4.1.1 공통사항

(1) 작업을 위한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고 누전시 감전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.



<그림 1> 이동용 조명기구

- (2)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노후·손상된 전선은 사용금지를 하며 작업 시 전선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.
- (3) 야간작업 시 조명기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적정조도를(75lux 이상) 유지하